

서울特別市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
免除에關한條例(案)審查報告書

1992년9월21일
總務財務委員會

1. 審查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2년8월29일
麻浦區廳長
나. 회부일자 : 1992년 9월9일
다. 상정일자 : 第11回臨時會 第2次委員會
('92.9.21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최영명)

가. 제안이유

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社會福祉事業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

나. 主要骨子

-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
○의료사업용에 이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
○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함.

3.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

(專門委員 : 김현기)

本條例는 民法 第32條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,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즉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로서 국민의 의료시혜 증진등 사회복지차원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.

그리고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운동현위원)

현재 마포구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없으니까 지금 제정할 이유가 없고, 필요시 제정해야 하지 않는가?

○답변요지(세무1과장 최영명)

전국적으로 공통 제정사항이고, 발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정이 바람직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서울特別市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
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(案)

제출년월일 : 1992년8월29일

제출자 : 麻浦區廳長

1. 제안이유

民法 第32條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○민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에 의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

○의료사업용에 이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

○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함.

○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

3. 관련법규

○지방세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○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4. 내무부장관 허가 및 서울특별시장 준체 시달

○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
의료업에 대한 구세파세 면제에 관한 조
례준칙 시달로 내무부 장관허가(근거 : 내
무부 세제22670-206호. 92.7.8자) 서울특
별시장 준칙(안)시달(근거 : 세정22670-728
호 92.8.3자)

5 예산사항 별도 조치 필요성을

서울特別市麻浦區宗教단체醫療業에對한 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(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종교단체(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. 이하 같다)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면제대상)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면제신청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
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
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特別市麻浦區社會教育施設에對한區稅課稅 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(案)審查報告書

1992년 9월 21일
總務財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9월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
('92.9.21) 상정의결

2. 제작설명의 요지

(제작설명자 : 세무1과장 최영명)

가. 제작이유

圖書館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
사립공공도서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
된 사회교육 시설임에도 세제지원 할
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
개정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
도록 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본조례 제2조에 6호를 신설

6. 도서관 전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 관

3. 전문위원회 보고의 8지

(전무위원 김현기)

본 조례는 도서관진흥법 적용을 받는
사립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으로 사회 각
분야에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
에 기여하도록, 구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
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한
개정으로 사료됨.

그리고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해당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.